



신규 법규정 업데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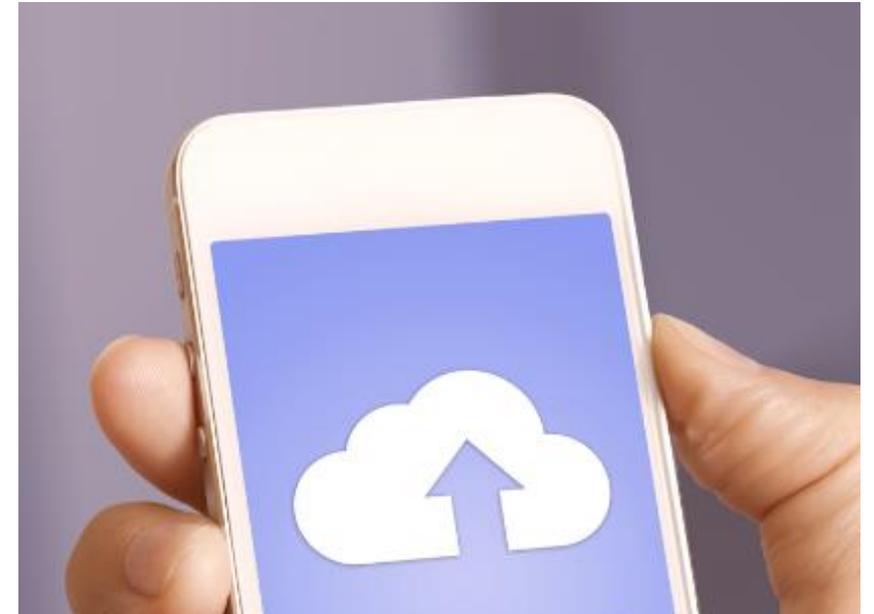
2020年7月



Content

2019년 6월, 국세청은 새로운 세무관리법을 통과 시켰으며, 몇 가지 중요한 내용 변경이 있었습니다. 신 세무관리법은 세금신고 및 납세과정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고 새로운 유형의 비즈니스에 대한 세금 징수를 관리하기 위한 법적 틀을 마련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Grant Thornton은 이번 달 Tax Newsletter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규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도움을주기 위해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2019년 세무관리법에 관한 주요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세무관리법 38/2019/QH14

이전 업데이트에서 언급되었듯이, 금번 신 세무관리법 38 / 2019 / QH14 (Law on Tax Administration 2019)가 2006년 및 2012년의 세무관리법을 대체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몇 가지 주목 할 만한 중요한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등록, 신고 및 납세에 대한 새로운 규정



특수관계자 거래 규정 강화



납세자 혜택 보충 조항 신설



전자세금계산서(e-invoice) 규정



전자상거래활동 규정 강화

1. 등록, 신고 및 납세에 대한 새로운 규정

- 납세자는 생산 또는 사업 활동을 시작하거나 납세의무가 발생하기 전에 (투자증명서(IRC), 사업자등록증명서(ERC) 또는 설립 및 운영 허가증 발급일로부터 10일이 아님) 국세청에 등록해야하고 세무 당국에 의해 세금 식별 번호를 받아야합니다.

납세자가 신고 마감일의 마지막 날에 세금을 온라인(전자적 방법)으로 신고하였지만 세무기관의 전자포털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납세자는 전자포털이 다시 활성화 될 때의 다음 날 전자신고 및 전자세금 납부 영수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및 납부 기한

신고 및 납부	변경 전	변경 후 (2020년 7월 1일)
분기별 신고 및 납부 시	다음 분기의 30일 이내	다음 분기 첫번째 달의 마지막일 (단, 법인세 분기 추정납부의 경우 여전히 "다음 분기의 30일 이내 납부" 규정이 적용됨)
연말 확정신고 시	연말 90일 이내	역년 혹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째 되는 달의 마지막 일
연간 세금신고 시	다음 해의 첫 달 30일 이내	역년 혹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첫번째 달의 마지막 일
개인소득세 확정신고 시 (개인이 직접)	연말 90일 이내	역년으로부터 4개월째 되는 달의 마지막 일



2. 전자세금계산서(e-invoice) 규정



2019년 세무관리법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문서 조항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재 정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문서에 관한 규정 적용을 목표로, 새로운 제도 초안을 작성 중입니다. 앞으로 뉴스레터에서 이에 관한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3. 특수관계자 거래 규정 강화

세무관리법 2019는 이전가격 및 탈세를 통제하기 위해 특수관계자거래와 관련된 중요한 원칙을 보완하였습니다.



“정상가격원칙” 및 “거래활동의실질,담세원칙을결정하는거래”는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과세 대상 가격을 결정하는데 사용됩니다.



기획투자부는 “이전가격의결정” 및 “세금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 프로젝트의 평가를 담당합니다.



특수관계자거래가 있는 납세자에게 납세자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서류를 준비, 작성, 신고하도록 요구하며, 이 서류에는 특수관계자의 해외 거주지 정보도 포함됩니다.



세무 당국은 해당 거래 관련 해외 세무 당국과의 납세자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정보 교환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4. 전자상거래활동 규정 강화

전자상거래 활동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신규 세무관리법의 추가 조항 :

- 전자상거래, 전자플랫폼 및 기타 서비스를 통해 베트남에 영구적으로 설립되지 않은 해외 업체가 제공하는 디지털 비즈니스 및 기타 서비스는 대표자가 직접 베트남에 세금을 등록,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시중 상업 은행은 베트남에서 수입을 창출하는 전자상거래 활동을 하는 해외 조직 및 개인을 대신하여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납부 할 책임이 있습니다.



5. 납세자 혜택 보충 조항 신설

- 납세자가 세무당국의 “행정 위반에 대한 처벌 및 결정” 지침을 준수하는 경우 벌과금 및 연체이자는 면제됩니다.
- 납세자는 이 법과 전자 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 된대로 세무 당국의 웹 포털에 보낸 모든 전자 기록에 접근하고 인쇄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또한 세무 당국 및 관련 기관 및 / 또는 기관과의 거래에서 전자 문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ntact

고객님께서 조세, 회계, 가격 이전, 외국인 의 활동, 투자, 세관 및 노동자, 투자 정책, 생산 영업 과정에 발생된 문제점들에 대한 자문을 더 필요하시면 우리 Grant Thornton 의 전문가 들하고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기 소식을 다운로드 하고 싶으신 경우, 우측 링크를 통하여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Tax Hub](#)

Head Office in Hanoi

18th Floor, Hoa Binh International Office Building
106 Hoang Quoc Viet Street, Cau Giay District, Hanoi, Vietnam
T + 84 24 3850 1686
F + 84 24 3850 1688

Hoang Khoi

National Head of Tax Services
D +84 24 3850 1618
E khoi.hoang@vn.gt.com

권혁준 (Kwon Huyck Jun)

Director – Korean Desk
D +84 24 3850 1679
E hyuckjun.kwon@vn.gt.com

Bui Kim Ngan

Tax Director
D +84 24 3850 1716
E ngan.bui@vn.gt.com

Nguyen Dinh Du

Tax Partner
D +84 24 3850 1620
E du.nguyen@vn.gt.com

Vishwa Sharan

Director – Transfer Pricing
D +84 327 345 053
E Vishwa.Sharan@vn.gt.com

김민제 (Kim Minje)

Manager – Korean Desk
D +84 379 591 011
E minje.kim@vn.gt.com

Ho Chi Minh City Office

14th Floor, Pearl Plaza, 561A Dien Bien Phu Street
Binh Thanh District, Ho Chi Minh City, Vietnam
T + 84 28 3910 9100
F + 84 28 3910 9101

Nguyen Hung Du

Tax Partner
D +84 28 3910 9231
E hungdu.nguyen@vn.gt.com

Tran Nguyen Mong Van

Tax Director
D +84 28 3910 9233
E mongvan.tran@vn.gt.com

Masato Karoji

Director – Japanese Desk
D +84 28 3910 9135
E masato.karoji@vn.gt.com

Valerie – Teo Liang Tuan

Tax Partner
D +84 28 3910 9235
E valerie.teo@vn.gt.com

Nguyen Thu Phuong

Tax Director
D +84 28 3910 9237
E thuphuong.nguyen@vn.gt.com

Lac Boi Tho

Tax Director
D +84 28 3910 9240
E tho.lac@vn.gt.com

© 2020 Grant Thornton (Vietnam) Limited - All rights reserved.

'Grant Thornton' refers to the brand under which the Grant Thornton member firms provide assurance, tax and advisory services to their clients and/or refers to one or more member firms, as the context requires. Grant Thornton International Ltd (GTIL) and the member firms are not a worldwide partnership. GTIL and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Services are delivered by the member firms. GTI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GTIL and its member firms are not agents of, and do not obligate, one another and are not liable for one another's acts or omissions.

